

# 급여지급 신청서(DC / 기업형IRP)

담당자	책임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앞

## 1 기본 정보

사용자(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방법*	<input type="checkbox"/> 개별 등록 <input type="checkbox"/> 일괄 등록(신청인원:      명)	제도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형DC <input type="checkbox"/> 표준형DC <input type="checkbox"/> 기업형IRP

※ 일괄등록 신청 시 EXCEL 파일 추가 제출 가능

## 2 개별 등록

### 1 공통 입력 사항 [64414]

가입자명*		주민등록번호*		임원 여부*	<input type="checkbox"/> 임원 <input type="checkbox"/> 근로자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퇴직 <input type="checkbox"/> 중도인출	청구구분* (퇴직신청 시)	<input type="checkbox"/> 일시금 <input type="checkbox"/> 개인형IRP 이전	급여신청유형* (퇴직신청 시)	<input type="checkbox"/> 퇴직일시금 <input type="checkbox"/> 전체기업반환
IRP이전 예외사유	<input type="checkbox"/> 근퇴법 시행이전 퇴직 <input type="checkbox"/> 만55세 이후 퇴직 <input type="checkbox"/> 퇴직금 3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사망일시금 <input type="checkbox"/> 출국 외국인				
입사일자*		퇴직일자*		현물이전* <sup>주1)</sup>	<input type="checkbox"/> 신청      ※ 우리은행IRP로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이체 시 신청 가능
중간정산일 <sup>주2)</sup>		중간정산지급일 <sup>주2)</sup>		예약지급일(선택)	

㉠ 예약지급일 : 상품 매도기간 확인 후 정상 이체일보다 늦은 날짜로 선택 가능

### 2 지급 신청 정보

퇴직급여 총액*	납입대상 기업부담금	원	※ 기존 기업부담금 외 추가 부담금 있을 경우 ③ '미납 부담금' 필수 작성
차감항목 [기업반환금]	<input type="checkbox"/> 일부 기업반환	반환금액 :	원    ※ 부담금 선납 등에 따라 퇴직시점에 기업반환금액 있는 경우 작성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 전환금 <sup>주3)</sup>	전환금액 :	원
	<input type="checkbox"/>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 <sup>주4)</sup>	한도금액 :	원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임원 퇴직소득한도 초과분은 기업 반환 후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기업 반환 요청 시 당행에 등록된 기업 반환 계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분리과세 정보 [선택 기재]

분리과세 사유	<input type="checkbox"/> 가입자의 사망 <input type="checkbox"/> 해외 이주 <input type="checkbox"/> 3개월 이상 요양 <input type="checkbox"/> 가입자의 파산/개인회생절차 개시 <input type="checkbox"/> 재난으로 인한 15일 이상의 임원 치료 <input type="checkbox"/> 기타		
3개월 이상 요양 추가정보	의료비 및 간병인 금액	원	휴직/휴업 개월수      개월

㉠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저율 분리과세【소득세법 제14조, 시행령 제20조의2】

부득이한 사유(해당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세율(3.3~5.5%, 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 적용대상 :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원금 및 개인부담금 운용수익

### 4 중도인출 신청 [선택 기재]

중도인출 구분	<input type="checkbox"/> 전액 <input type="checkbox"/> 일부	일부 중도인출금액	원
매도상품지정 (선택 사항)	상품명 (일부 중도인출 신청 시)		신청금액
	①		원
	②		원
중도인출 사유	<input type="checkbox"/> 무주택자 주택 구입 <input type="checkbox"/> (가입자 본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input type="checkbox"/> 무주택자 주택 전세/임차보증금 부담*(1사업장 1회) <input type="checkbox"/> (가입자 본인) 파산선고 <input type="checkbox"/> 가입자·배우자·부양가족의 6월 이상 요양(질병·부상) <input type="checkbox"/> (고용노동부 고시) 재난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 의료비를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 12.5% 초과 부담		

㉠ 매도상품지정 : 특정 상품을 매도하여 중도인출 요청하는 경우 작성하며, 미작성 시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제4조에 따라 매도됩니다.

㉡ 중도인출 사유 중 주택 전세/임차보증금 부담의 경우 ⑥ 사용자(기업) 확인 필수 작성 바랍니다.



### ③ 추가 입력 정보

미납 부담금 <sup>주5)</sup> [추가 입금액]	<input type="checkbox"/> 추가 입금액 <b>있음</b>	퇴직연금(법정) 추가 입금액	원	입금예정일	
	<input type="checkbox"/> 추가 입금액 <b>없음</b>				
중간 정산 특례 적용	<input type="checkbox"/> 당해연도 이전에 해당 회사에서 지급 받은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내역 합산과세 여부				
	<input type="checkbox"/> 합산과세 <b>적용</b>	중간정산(중도인출) 기산일			
		기지급 총 중간정산금액 <sup>주6)</sup>		원	
		기납부 퇴직소득세 <sup>주7)</sup>		원	
<input type="checkbox"/> 합산과세 <b>미적용</b>					

- ㉠ 미납 부담금 입금예정일 : 영업점 지급등록 완료 확인 후 DC/기업형IRP 계좌에 추가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 당해연도 기 중도인출 내역이 있는 경우 무조건 합산과세 적용됩니다.

### ④ 입금계좌 정보(택 1)\*

개인형IRP 계좌 (법정의무)	이전후 퇴직연금사업자	이체 금융기관	개인형 IRP 계좌번호

- ㉠ 입금계좌가 우리은행IRP<sup>주8)</sup>가 아닌 타금융기관 개인형IRP일 경우 통장 사본 또는 가입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형IRP 內 세액공제용 개인부담금이 입금되어 있거나 입금 예정인 경우, 퇴직금만 일부 해지 불가합니다.

입출금 계좌	이체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본인 계좌 원칙)

- ㉠ 만55세 이후 퇴직, 퇴직금 300만원 이하, 가입자 사망, 출국 외국인 등 개인형IRP 의무이전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택 가능

### ⑤ 퇴직자 동의<sup>주9)</sup>

사용자(기업)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아래 동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사용자(기업)와 합의에 의하여 법정지급기한(14일)을 초과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가입자(퇴직자명): \_\_\_\_\_ (서명)

### ⑥ 사용자(기업) 확인사항 (중도인출 사유 중 무주택자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의 경우만 ✓ 표시 필수)

회사는 해당 가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주택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을 이유로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실시한 바 없음을 확인합니다.

#### ■ [첨부 서류] 체크 [✓]

- 퇴직연금 중도인출 확인서(신청인 작성)
    - ※ 중도인출 사유별 증빙서류 일체 포함
  - 퇴직연금 중도인출 체크리스트(은행 작성)
  - 「연금보험료 등의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 분리과세 사유별 증빙자료
  - 다른 금융기관의 IRP로 급여 이전
    - 가입자 IRP 계좌사본(IRP 확인가능서류)
  - 출국 외국인 근로자 IRP 이전 예외① ② 모두 징구
    - ①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자:  
외국인등록증(여권) 비자 C-4/E-1~10/H-2 확인
    - ② 퇴직 후 국외 출국:  
출국항공권(사본) 또는 해외출국확약서
  - 사망에 의한 지급
    - 대표상속인 지정 확인서 외
- ㉠ 자세한 사항은 작성방법 참조

20    년    월    일

<b>가입자*</b> (퇴직자)	성    명	서명/날인
※ 가입자정보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지급예정일 안내문자 발송(중도인출건 제외)		

<b>기업명*</b>	기업명	서명/날인
-------------	-----	-------

<b>접수자*</b>	성명 / 행번	접수일자
-------------	---------	------



## ■ 첨부 서류

구분	업무 내용	필요 서류
분리과세 신청	☞ 가입자의 사망	▪ 사망확인서류 : 기본증명서
	☞ 3개월 이상 요양 또는 재난으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 의사의 진단서 및 의료비영수증(필수) ▪ 간병인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등) 포함된 간병료 영수증
	☞ 해외 이주	▪ 해외이주 신고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가입자의 파산	▪ 파산선고 결정문
	☞ 가입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중도인출 신청	☞ 중도인출에 의한 지급 증빙서류	▪ 퇴직연금 중도인출 확인서(신청인 작성) ▪ 중도인출 체크리스트(은행작성) ▪ 중도인출 사유별 증빙서류
제3자 수령(상속)	☞ 사망에 의한 지급 증빙서류	▪ 가입자의 기본증명서(사망일자 기재) ▪ 가입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의 범위 확인) ▪ 퇴직연금 대표수익자 지정합의서(인감증명서 포함) ▪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선택사항) ▪ 대표상속인의 통장사본(당행계좌 제외)
퇴직금 합산과세	☞ 중간정산 퇴직금 합산과세 서류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해당 년도)

## ■ 작성 방법

### ① 공통 입력 사항

- 주1) 현물이전 : DC 가입자 퇴직 시 운용자산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개인형 IRP로 이전하는 것  
 - 전 상품(정기예금, 발행어음, ELB, 펀드, ETF, GIC) 현물이전 가능하며, 입금계좌가 우리은행 개인형IRP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개인형IRP 입금 완료까지 신청일 포함 2영업일 소요
- 주2) 중간정산일 및 중간정산지급일 : 근로자가 재직 중 중간정산을 받았을 경우 정확한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중간정산일과 중간정산지급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

### ② 지급 신청 정보

- 주3) 국민연금 전환금(회사납입액)은 개인형IRP 이전 시에도 기업 반환 신청 가능. 단, 기업 반환 시에는 전환금액만큼 근로자가 부담하여 개인형IRP로 추가 입금을 해야 과세이연이 완료되므로 주의
- 주4)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금액 계산방법(① + ② + ③)

①	2011.12.31.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한도
②	2019.12.31. 이전 3년간의 연평균급여 환산액 × 10% × 2012.1.1. ~ 2019.12.31.까지의 근속연수 × 3배
③	퇴직 직전 3년간의 연평균급여 환산액 × 10% × 2020.01.01. 이후 근속연수 × 2배

- 단, 회사에서 원천징수 완료한 퇴직소득(중간정산, 추가 퇴직소득 등)은 차감 후 산출합니다.

### ③ 추가 입력 정보

- 주5) 지급 예정일 전 회사가 미납 부담금[추가 입금액]만큼 추가 입금해야 지급 처리가 완료되며, 기일 내 미입금 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주6) 기지급 총 중간정산금액 : 중간정산 합산 세액정산 특례 적용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가 당해 회사에서 재직 중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 내역(세전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입력하여야 함  
 - 중간정산 당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지급받은 세전 퇴직급여액 확인
- 주7) 기납부 퇴직소득세 : 중간정산 합산 세액정산 특례 적용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가 당해 회사에서 재직 중 중간정산 받을 당시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액(지방소득세 제외)을 모두 입력  
 - 중간정산 당시에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퇴직소득세액 확인

### ④ 입금계좌정보(개인형IRP)

- 주8) 우리은행 개인형 IRP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안내

인터넷·모바일뱅킹 신규	수수료 면제.		
	단, 최초 입금일로부터 1년 경과 전 他 금융기관 이전 또는 중도해지 시 전체 기간 은행 방문 신규 수수료를 적용		
은행 방문 신규	개인부담금		
	1억 미만	0.28%	퇴직금 0.45%
	1억 이상	0.25%	0.38%

### ⑤ 퇴직자 동의

- 주9) 사용자와 퇴직자가 법정 지급기한(14일)을 초과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경우 작성

